

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06. 8. 28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제안이유

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주요내용

- 가. 지방재정법의 인용조항 “제16조의2”를 “제33조”로 변경함(안 제1조)
- 나. 부위원장의 직무중 법령에서 통상 사용되는 용어인 “사고가 있을 때”를 “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”로 변경함(안 제3조제2항)
- 다. 의사결정에 있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고자 단서 조항 삭제(안 제5조제3항)

참고자료

- 가. 관계법령 발췌

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재정법 제16조의2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중 “사고가 있을 때”를 “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”로 한다.

제5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재정법 제16조의2</u>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-----「<u>지방재정법</u>」제33조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) ① (생략)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<u>사고가 있을 때에는</u>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제3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<u>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</u>-----.</p>
<p>제5조(회의) ① ~ ② (생략)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u>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</u></p>	<p>제5조(회의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<u><단서삭제></u></p>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재정법

제10조 (교육·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) 이 법에서 교육·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 회계에 관하여는 "지방자치단체의 장" 또는 "시·도지사"는 "교육감"으로, "행정자치부장관"은 "교육인적자원 부장관"으로, "행정자치부"는 "교육인적자원부"로, "지방재정"은 "지방교육재정"으로 각각 본다.

제33조 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,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 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
⑤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